

환경부고시 제2020- 00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제11호다목의 도장방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환경부장관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4 제11호다목 단서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도장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고시는 시행규칙 별표 13 제5호마목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도장방식) 시행규칙 별표 14 제11호다목의 도장공사장에서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의 도장방식은 롤러방식(붓칠방식 포함) 외 다음의 1호 또는 2호와 같다.

1. 저감설비를 부착한 분사설비를 이용하는 분사방식

가. 도료가 도장외벽 외의 방향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분사기의 노즐 주변 공간을 감싸는 형태의 설비를 부착

나. 가목에 따른 설비는 비산면지가 통과되지 않는 플라스틱 등의 비투과성 재질로 구성

다. 가목에 따른 설비는 도료가 분사되는 최초 지점부터 도장외벽까지의 직선거리 중 20cm 이상 차단(도장외벽과 설비 사이 간격 10cm 이하)

라. 가목에 따른 설비와 분사기는 도장외벽에 평행이동하도록 운용

마. 가목에 따른 설비 내부에 도료가 축적되어 외부로 흘러 내리지 않도록 주기적 제거

2. 해당 작업 부위 또는 해당 층에 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시행하는 분사방식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